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성기공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4. 선고 2000나5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피고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하수급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나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제13조 제1항)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을 만기로 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으로 하여금 제13조 제4항 또는 제5항 소정의 이자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3조 제2항이 당사자간에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인과 사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당사자간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이나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급기일이 아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위 2000더596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고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또는 그 완공 직전에 위 회사로부터 기성부분 대금 또는 잔금액을 액면으로 하여 발행교부 받았으나 그 지급기일이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이후의 일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대하여, 그 각 약속어음의 유일한 주채무자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가 모두 위 회사로 동일하고 달리 어음상의 채무자가 없다는 점만으로 각 약속어음이 원인채권인 공사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각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은 제3자인 은행에 의하여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지급 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만일 채권자가 먼저 원인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가 이중으로 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어 채무자의 기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각 약속어음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일이 피고의 보증기간 이후의 일자로 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당시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결국 원고는 각 약속어음을 수령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각 약속어음의 만기까지 유예해 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모두 피고가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도래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하수급인인 원고와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 사이에 임의로 60일을 초과하는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수수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이 연장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그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다시 그 지급기일이 피고의 보증기간 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7.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보증사고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서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 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에까지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드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해석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을 때 보증약관을 함께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증약관의 조항을 몰랐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